

**법령단위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b>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b>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b>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b>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p><b>제1장 총칙 &lt;개정 2012.5.23&gt;</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6.10.12&gt;</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b></p> <p>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li> <li>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li> <li>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11.12]</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4.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li> </ol>	<p><b>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b>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p>	<p><b>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b>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p>

<p>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p> <p>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p> <p>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p> <p>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p> <p>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p> <p>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p> <p>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구성된 지역을 말한다.</p> <p>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p> <p>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p>	<p>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0.12, 2008.2.29, 2008.8.7, 2013.3.23, 2017.7.26&gt;</p> <p>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1호서식과 같다. &lt;개정 2008.9.3&gt;</p> <p>② 삭제 &lt;2008.9.3&gt;</p>
--	---	---

<p>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p> <p>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b>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6.10.12,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li> <li>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li> <li>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li> <li>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li> </ol> <p>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p>	<p><b>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b>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9.3, 2013.3.24, 2017.7.26&gt;</p>

	<p>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 ④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b>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정관</li><li>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li><li>3.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li><li>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li><li>5. 교육규정</li></ol>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별표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li><li>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li></ol> <p>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3]</p>
		<p><b>제3조의3(품질인증 등급)</b> 법 제13조</p>

		<p>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중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lt;2015.12.28&gt;]</p>
		<p><b>제3조의4(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2.11.23&gt;</li> <li>2.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li> <li>3.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23, 2013.3.24, 2015.12.28,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li> <li>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li> <li>3.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 2017.7.26&gt;                  [본조신설 2008.9.3]                  [제3조의3에서 이동 &lt;2015.12.28&gt;]</p>
<p><b>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b>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b>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b>제4조(품질인증의 신청)</b>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4.6.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li> <li>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li> <li>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li> <li>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li> <li>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li> <li>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li> <li>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6.10.12,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li> <li>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li> <li>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li> </ol> <p>③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9.3, 2015.12.28,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설명서</li> <li>2. 사용자취급설명서</li> <li>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li> </ol>
<p><b>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lt;개정 2012.5.23&gt;</b></p> <p><b>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p>	<p><b>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b>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b>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9.3&gt;</p> <p>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6.3, 2017.7.26&gt;</p> <p>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3.23, 2014.6.3, 2017.7.26&gt;</p> <p>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4.6.3&gt;</p> <p>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6.3&gt;</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p> <p>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p>	<p><b>제6조(인증마크)</b>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lt;개정 2008.9.3&gt;</p>
		<p><b>제6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b>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p>

		<p>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영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li><li>2. 정관</li><li>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 계획서</li></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li><li>2.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li><li>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li></ol> <p>[본조신설 2015.12.31]</p>
		<p><b>제6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등)</b>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품설명서</li><li>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li></ol>



<p><b>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4.6.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li> <li>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전문개정 2012.5.23]</p>	<p><b>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b>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10.10.27,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사업자</li> <li>2.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본조신설 2015.12.31]</p> <p><b>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요청)</b> ① 법 제20조의 2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관련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14조의 3제5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9.3]</p>
		<p><b>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b> 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li> <li>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 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li> <li>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li> <li>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li> <li>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li> </ol> <p>[본조신설 2015.12.31]</p>
<p><b>제8조(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b></p>	<p><b>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b></p>	<p><b>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b> ① 국</p>

<p><b>화)</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10.27, 2013.3.23, 2017.7.26&gt;</p> <p>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신설 2010.10.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li> <li>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li> <li>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09.8.18, 2010.10.27,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li>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li> <li>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li> <li>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li> </ol>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12, 2013.3.23, 2017.7.26&gt;</p> <p>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12.11.12, 2015.12.30&gt;</p>	<p>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li> <li>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7.7.26&gt; [전문개정 2015.12.31]</p>
---	---	--

	<p>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12, 2013.3.23, 2017.7.26&gt;</p> <p>⑦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10.27,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08.8.7]</p>	
<p><b>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b>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lt;개정 2014.5.28&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b>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li> <li>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li> <li>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li> </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12, 2013.3.23, 2017.7.26&gt;</p> <p>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08.8.7]</p>	<p><b>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b>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삭제 &lt;2012.11.23&gt;</li> <li>3. 별표 3의 작성 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프로세스 인증 사업계획서</li> <li>4. 별표 4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4, 2017.7.26&gt;</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1.23, 2013.3.24,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li> <li>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li> </ol> <p>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p>

		<p>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 2017.7.26&gt; [본조신설 2008.9.3]</p>
	<p><b>제9조의2(품질인증기준)</b>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효율성·사용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본조신설 2008.8.7]</p>	
<p><b>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b>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b> ① 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2017.7.26&gt;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lt;개정 2008.8.7&gt;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8.7, 2013.3.23, 2017.7.26&gt; ④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b>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 절차 등)</b> ①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프로세스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23&gt;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을 부여하기 전에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프로세스가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그</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p>		<p>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23&gt;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gt; [본조신설 2008.9.3]</p>
	<p><b>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b>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lt;개정 2017.7.26&gt;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7.7.26&gt; [본조신설 2015.12.30] [중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lt;2015.12.30&gt;]</p>	
	<p><b>제10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b>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지정시험기관은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동일한 소프</p>	

	<p>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7.7.26&gt; [본조신설 2015.12.30] [중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6으로 이동 &lt;2015.12.30&gt;]</p>	
	<p><b>제10조의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등)</b></p> <p>① 법 제1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p>③ 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7.7.26&gt; [본조신설 2015.12.30]</p>	
	<p><b>제10조의5(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b></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li><li>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li><li>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li><li>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p>	

	<p>2013.3.23, 2017.7.26&gt; [본조신설 2008.8.7] [제10조의2에서 이동 &lt;2015.12.30&gt;]</p>	
	<p><b>제10조의6(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출요청사유</li> <li>2. 제출기한</li> <li>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li> <li>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li> <li>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li> </ol> <p>[본조신설 2008.8.7] [제10조의3에서 이동 &lt;2015.12.30&gt;]</p>	
<p><b>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b>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b>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lt;개정 2008.8.7, 2009.8.18,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li> <li>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li> <li>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li> </ol> <p>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2017.7.26&gt;</p> <p>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b>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lt;개정 2012.11.23&gt;</b> [본조신설 2008.9.3]</p>

<p><b>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b></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전문개정 2012.5.23]</p>	<p>[제목개정 2008.8.7]</p> <p><b>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b></p> <p>① 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lt;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li> </ol> <p>② 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8.7&gt;</p> <p>[제목개정 2008.8.7]</p>	<p><b>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b></p> <p>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p> <p>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4, 2017.7.26&gt;</p> <p>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9.3]</p>
	<p><b>제12조의2(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등)</b></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및 제품 정보의 수집·분석</li> <li>2.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li> <li>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li> <li>4.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li> <li>5. 그 밖에 정품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전문개정 2012.11.12]</p>	
	<p><b>제12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b>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10.12]</p>	
<p><b>제13조(품질인증)</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p>	<p><b>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b></p> <p>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5.12.30,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li> <li>2.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0일</li> </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p>	<p><b>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b>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 &lt;2012.11.23&gt;</li> <li>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li> <li>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4. 삭제 &lt;2012.11.23&gt;</li> <li>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p>

<p>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li> <li>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li> </ol> <p>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7]</p>	<p>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23&gt;</p> <p>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12.11.23&gt;</p> <p>④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lt;개정 2012.11.23&gt;</p> <p>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1.23&gt; [본조신설 2008.9.3]</p>
<p><b>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7.7.26&gt;</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b>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lt;개정 2012.11.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제품명</li> <li>2. 수량 및 계약금액</li> <li>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li> <li>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li> </ol>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2.11.12, 2013.3.23, 2017.7.26&gt; [본조신설 2010.10.27]</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li> <li>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li> </ol> <p>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p>		
<p><b>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b>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p>	<p><b>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b></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② 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2017.7.26&gt;</p> <p>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b>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09.8.18, 2012.11.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li><li>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li><li>3.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li></ol>	

	<p>기술사이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p> <p>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a href="#">[본조신설 2008.8.7]</a></p>	
	<p><b>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b> 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p> <p>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p> <p>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p>	

	<p>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8.7]</p>	
	<p><b>제14조의4(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b> ① 법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2.30]</p>	
	<p><b>제14조의5(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b>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0]</p>	
<p><b>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b>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6.3, 2017.7.26&gt;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6.3&gt;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4.6.3&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12.11.12]</p>	

<p><b>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b></p> <p>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b>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12]</p>	
	<p><b>제16조의2(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위탁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본조신설 2012.11.12] [중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lt;2012.11.12&gt;]</p>	
	<p><b>제16조의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등)</b>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li><li>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갖출 것</li></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p>	

	<p>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11.12, 2013.3.23, 2017.7.26&gt;</p> <p>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 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본조신설 2008.8.7]</p> <p>[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 3은 제16조의4로 이동 &lt;2012.11.12&gt;]</p>	
	<p><b>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기준)</b>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li>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li>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li>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li>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li></ol> <p>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본조신설 2008.8.7]</p> <p>[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 4는 제16조의5로 이동 &lt;2012.11.12&gt;]</p>	
	<p><b>제16조의5(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b>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4에서 이동 &lt;2012.11.12&gt;]</p>	
<p><b>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b>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5.22]</p>	<p><b>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b></p> <p>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p><b>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b>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6.10.12, 2008.8.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방자치단체</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li> <li>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li> <li>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li> </ol>	

	<p>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a href="#">[본조신설 2004.2.25]</a></p>	
	<b>제17조의3</b> 삭제 <2012.11.12>	
	<p><b>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b>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a href="#">[전문개정 2010.10.27]</a></p>	
	<p><b>제17조의5(자료협조)</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  <a href="#">[본조신설 2004.2.25]</a></p>	
	<p><b>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a href="#">[본조신설 2012.11.12]</a>  <a href="#">[중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lt;2012.11.12&gt;]</a></p>	
	<p><b>제17조의7(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b>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p>	

	2017.7.26> [본조신설 2008.8.7] [제17조의6에서 이동 <2012.11.12>]	
	<b>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 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관리·감독 2. 법 제24조의4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분석 3. 법 제24조의4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권고 업무의 지원 및 그 결과의 접수·처리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12.11.12]	
<b>제18조(세제지원 등)</b>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b>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절차 등)</b>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b>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b>	<b>제19조(정관기재사항)</b>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	

<p><b>성화 &lt;개정 2012.5.23&gt;</b></p> <p><b>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 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 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사업에 관한 사항</li> <li>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li> <li>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li> <li>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li> <li>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li>11. 삭제 &lt;2016.12.30&gt;</li> <li>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li> <li>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14. 삭제 &lt;2016.12.30&gt;</li> <li>15. 공고에 관한 사항</li> <li>16. 삭제 &lt;2016.12.30&gt;</li> <li>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ol>	
<p><b>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p>	<p><b>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b>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업</li> <li>4. 사무소의 소재지</li> <li>5. 설립인가 연월일</li> <li>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li> <li>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li> <li>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li> <li>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li> <li>10. 대리인에 관한 사항</li> <li>11. 공고의 방법</li> </ol> <p>②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p>	

<p>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심의위원회)</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p>		

<p>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p> <p>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b>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li><li>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li></ol> <p>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li>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li>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ol> <p>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p>		

<p>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7.7.26&gt; [전문개정 2014.12.30]</p>		
<p><b>제20조의4(시정요구 등)</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li><li>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li></ol> <p>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중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lt;2014.12.30&gt;]</p>		
<p><b>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b>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p>		

<p>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 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 템을 구축한 경우 [전문개정 2012.5.23] [제20조의4에서 이동 &lt;2014.12.30&gt;]</p>		
<p><b>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 상)</b>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 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b> ①법 제28 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lt;개정 2012.11.12&gt;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 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 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 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 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 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 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 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 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 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 다. 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p>	
<p><b>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b>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 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 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p>	<p><b>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b> 법 제29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 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p>	



<p>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li><li>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li><li>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li><li>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li><li>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li></ol>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b>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b> 법 제30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li><li>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li><li>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효율에 관한 사항</li><li>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ol>	

<p>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li><li>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li><li>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li></ol> <p>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b></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b></p> <p>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12.30&gt;</p> <p>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p> <p>③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p>	
<p><b>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b></p> <p>①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p>		

<p>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lt;개정 2013.3.23, 2013.12.30, 2014.6.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삭제 &lt;2015.12.22&gt;</li><li>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li><li>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li></ol>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p> <p>&lt;개정 2013.3.23, 2013.12.30, 2017.7.26&gt;</p> <p>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p>		
--	--	--

<p>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b>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삭제 &lt;2015.6.22&gt;</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gt;</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p>		

<p>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lt;개정 2013.3.23, 2017.7.26&gt;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p>		
<p><b>제25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b>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lt;2016.12.30&gt;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p>	
<p><b>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b>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b>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p>	
<p><b>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b>                  &lt;개정 2012.5.23&gt;  <b>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b></p>	<p><b>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b>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p>	

<p>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 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p> <p>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회계처리한다. &lt;개정 2015.12.30&gt;</p> <p>②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lt;개정 2015.12.30&gt;</p>	
<p><b>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b>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li> <li>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li> <li>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li> <li>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전문개정 2012.5.23]</p>	<p><b>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li> <li>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li> <li>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li> </ol>	
<p><b>제29조(기본재산의 조성)</b>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li> </ol>	<p><b>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24조의3 제5항 및 제17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수리,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p>	

<p>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p> <p>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본조신설 2012.11.12]</p>	
<p><b>제30조(공제규정)</b> ① 공제조합은 제28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대상, 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 2017.7.26&gt;</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0조(규제의 재검토)</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li> <li>2. 제4조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li> <li>3.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2016년 1월 1일</li> <li>4. 제23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2017년 1월 1일</li> <li>5.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2017년 1월 1일</li> <li>6. 제26조에 따른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2017년 1월 1일</li> </ol> <p>[전문개정 2016.12.30]</p>	
<p><b>제3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b></p> <p>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5.23]</p>	<p><b>제31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b>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p>		



<p>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32조(지분의 양도 등)</b>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lt;개정 2014.5.20&gt;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채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32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b>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p>	<p><b>제33조</b> 삭제 &lt;2010.10.27&gt;</p>	

<p>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p> <p>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2014.12.30&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34조(대리인의 선임)</b>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34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b>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lt;개정 2014.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월손실금의 보전</li> <li>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li> <li>3. 이익준비금의 적립</li> <li>4. 사업준비금의 적립</li> <li>5. 이익금의 배당</li> </ol> <p>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p> <p>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lt;신설 2014.12.30&gt; [전문개정 2012.5.23]</p>	<p><b>제35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6조(배상책임 등)</b>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p>	<p><b>제36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37조</b> 삭제 &lt;2010.10.27&gt;</p>	

<p><b>제5장 보칙 &lt;신설&gt;</b> 2015.12.22&gt;</p> <p><b>제37조(청문)</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li> <li>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li> <li>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li> <li>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li> <li>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li> </ol> <p>[본조신설 2015.12.22]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lt;2015.12.22&gt;]</p>		
<p><b>제38조(규제의 재검토)</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li> <li>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li> </ol> <p>[본조신설 2015.6.22] [제38조에서 이동 &lt;2015.12.22&gt;]</p>	<p><b>제38조</b> 삭제 &lt;2010.10.27&gt;</p>	
<p><b>부칙 &lt;제6198호, 2000.1.21.&gt;</b></p> <p><b>제1조</b>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로 본다.</p> <p><b>제3조</b>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p>	<p><b>부칙 &lt;제16943호, 2000.8.5.&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i> <li>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li> <li>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li> </ol>	<p><b>부칙 &lt;제102호, 2000.8.19.&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제27호, 2008.9.3.&gt;</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 &lt;제273호, 2012.11.23.&gt;</b> <b>제1조</b>(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록,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b>부칙 &lt;제1호, 2013.3.24.&gt; (미래</b></p>

<p>다.</p> <p><b>제4조</b>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b>제5조</b>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의 규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 및 의무에 대한登記부 및 기타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p> <p><b>제6조</b> (다른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6항제1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p> <p><b>제7조</b>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칙</b> &lt;제6472호, 2001.5.24.&gt; (기술개발촉진법)</p> <p><b>제1조</b>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p>	<p>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b>부칙</b> &lt;제18293호, 2004.2.25.&gt;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8594호, 2004.12.3.&gt;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p> <p><b>제1조</b>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및 제3조 생략</p> <p><b>제4조</b>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⑪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p> <p>⑫내지 ⑫생략</p> <p><b>제5조</b> 생략</p> <p><b>부칙</b> &lt;제19513호, 2006.6.12.&gt;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b>제1조</b>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및 제3조 생략</p> <p><b>제4조</b>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lt;134&gt;생략</p> <p>&lt;135&gt;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0조중 "법제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lt;136&gt;내지 &lt;241&gt;생략</p> <p><b>부칙</b> &lt;제19701호, 2006.10.12.&gt; 이 영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0678호, 2008.2.29.&gt;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b>제1조</b>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b>제7조</b>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p> <p>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b>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p> <p><b>제1조</b>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b>제6조</b>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p> <p>⑱부터 ㉑까지 생략</p> <p><b>부칙</b> &lt;제20호, 2014.5.27.&gt;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55호, 2015.12.28.&gt;</p> <p><b>제1조</b>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1등급의 품질인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3조</b> (인증마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p>
---	--	---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627호, 2002.1.26.> (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㉒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37호, 2003.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내지 <68>생략

**부칙** <제7816호, 2005.12.30.>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0조 중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로 한다.

㉑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965호, 200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인정범위에 해당하게 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9180709}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

**부칙** <제21692호, 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에 따른 인증마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인증등급이 1등급인 품질인증서를 말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 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59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의2제5호,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p>에 관한법률)</p> <p><b>제1조</b>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b> 내지 제4조 생략</p> <p><b>제5조</b>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p> <p>②생략</p> <p><b>부칙</b> &lt;제8361호, 2007.4.11.&gt;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p> <p><b>제1조</b>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b> 내지 제8조 생략</p> <p><b>제9조</b>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p> <p>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p> <p>⑨내지 ⑰생략</p> <p><b>제10조</b> 생략</p> <p><b>부칙</b> &lt;제8774호, 2007.12.21.&gt;</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하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8852호, 2008.2.29.&gt; (정부조직법)</p> <p><b>제1조</b>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lt;생략&gt;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b>제6조</b>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p>	<p>⑱ 까지 생략</p> <p>⑳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p> <p>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p> <p>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p> <p>㉓ 부터 ㉔ 까지 생략</p> <p><b>제6조</b> 생략</p> <p><b>부칙</b> &lt;제22463호, 2010.10.27.&gt;</p> <p><b>제1조</b>(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터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24174호, 2012.11.12.&gt;</p> <p><b>제1조</b>(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부칙</b> &lt;제24442호, 2013.3.23.&gt;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b>제1조</b>(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p><b>제12조</b>(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p> <p>㉔부터 ㉔까지 생략</p>
---	--	---

<p>&lt;417&gt; 까지 생략</p> <p>&lt;418&g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제8호,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lt;419&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p> <p><b>제7조 생략</b></p> <p><b>부칙</b> &lt;제9401호, 2009.1.30.&gt; (국유재산법)</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b>제10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p> <p>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p> <p>⑥ 부터 &lt;86&gt; 까지 생략</p> <p><b>제11조 생략</b></p> <p><b>부칙</b> &lt;제9501호, 2009.3.18.&gt;</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p>	<p>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p> <p>⑩부터 &lt;92&gt;까지 생략</p> <p><b>부칙</b> &lt;제25050호, 2013.12.30.&gt;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부칙</b> &lt;제25840호, 2014.12.9.&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b>제1조</b>(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p> <p><b>부칙</b> &lt;제26767호, 2015.12.30.&gt;</p> <p>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p>	
---	---	--

<p>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b>부칙</b> &lt;제9685호, 2009.5.21.&g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b>제7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p> <p>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p> <p>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p> <p>⑯ 부터 ㉞ 까지 생략</p> <p><b>제8조</b> 생략</p> <p><b>부칙</b> &lt;제9708호, 2009.5.22.&gt; (정보통신산업 진흥법)</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b>제10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p> <p>⑦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 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⑧ 부터 ⑮ 까지 생략</p> <p><b>제11조</b> 및 제12조 생략</p> <p><b>부칙</b> &lt;제9883호, 2009.12.30.&gt;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7751호, 2016.12.30.&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b>제1조</b>(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p><b>부칙</b> &lt;제28210호, 2017.7.26.&g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b>제1조</b>(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b>제6조</b>(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 까지 생략</p> <p>㉟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p> <p>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제4항,</p>	
---	--	--



<p><b>부칙</b> &lt;제10012호, 2010.2.4.&gt; (전자정부법)</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b>제5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p> <p><b>제6조</b> 생략</p> <p><b>부칙</b> &lt;제10220호, 2010.3.31.&gt; (지방세특례제한법)</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및 제3조 생략</p> <p><b>제4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㉑ 부터 ㉕ 까지 생략</p> <p><b>제5조</b> 생략</p> <p><b>부칙</b> &lt;제10445호, 2011.3.9.&gt;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p> <p><b>제3조</b> 및 제4조 생략</p> <p><b>부칙</b> &lt;제11436호, 2012.5.23.&gt;</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p>	<p>제10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㉖부터 &lt;70&gt;까지 생략</p>	
--	---	--

<p>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유효기간)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참여(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한 계약의 체결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p> <p><b>부칙</b> &lt;제11690호, 2013.3.23.&gt; (정부조직법)</p> <p><b>제1조</b>(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b>제6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393&gt;까지 생략</p> <p>&lt;394&g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p> <p>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지식경</p>		
--	--	--

<p>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lt;395&gt;부터 &lt;710&gt;까지 생략</p> <p><b>제7조</b> 생략</p> <p><b>부칙</b> &lt;제12120호, 2013.12.30.&gt;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2591호, 2014.5.20.&gt; (상법)</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 및 제3조 생략</p> <p><b>제4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p> <p>⑤부터 ⑩까지 생략</p> <p><b>부칙</b> &lt;제12687호, 2014.5.28.&gt; (지방재정법)</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p> <p><b>제22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p> <p>⑨부터 ⑬까지 생략</p> <p><b>부칙</b> &lt;제12722호, 2014.6.3.&gt;</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2872호, 2014.12.30.&gt;</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p>		
--	--	--

<p>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13342호, 2015.6.22.&gt;</p> <p><b>제1조</b>(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b>(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13583호, 2015.12.22.&gt;</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4839호, 2017.7.26.&gt; (정부조직법)</p> <p><b>제1조</b>(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b>제5조</b>(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352&gt;까지 생략</p> <p>&lt;353&g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의3</p>		
---	--	--

<p>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4조의4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p> <p>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p> <p>&lt;354&gt;부터 &lt;382&gt;까지 생략</p> <p><b>제6조 생략</b></p>		
---	--	--